공 개

의안번호	제 287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7. 1. (제 12 차)

의결사항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7. 1.

1. 의결주문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더 큰 측면이 있어 양도를 제한

3. 주요내용

가.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양도를 제한(안 제6조의2)

신복위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의 양도를 제한

4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 : 행정예고('26. 5. 14.~'26. 5. 26.) 결과는 붙임 참조

마. 2026년도 제12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6.25.) 심의필

금융위원회고시 제2026-318호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영 제9조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”이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) <신 설>	제6조의2(양도 제한 개인금융채권) 영 제9조제4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”이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한 신속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서민금융과	서민금융보호국
연 락 처	02-2100-2610	02-3145-8410